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거나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·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522호, '21. 11. 30. 공포, '22. 12. 1. 시행) 및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(법률 제13442호, '15. 7. 24. 공포, '16. 1. 25. 시행)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”를 “경우의 직선 삽입 기준은 시·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,”로 한다.

제35조의3제1항제4호 중 “또는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”을 “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3조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14조제10호”를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4조제1항제10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직선의 삽입 등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.	제14조(직선의 삽입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 <u>경우의 직선 삽입 기준은 시·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, -----.</u>
제35조의3(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) ①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. 1. ~ 3. (생략) 4.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 5. (생략) ② (생략)	제35조의3(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) ①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----- -----.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73조(내진설계기준)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14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제73조(내진설계기준)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4조제1항제10호----- -----.